[회의록]제202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83차

1. 회의일시: 2025년 2월 12일(수) 오후 6시 30분

2. 회의장소: 무위당사람들 교육장(중앙로 83, 4층)
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염은경, 천혜란, 이윤승, 정연우, 김선기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9명)
참관 : 장동성 감사
불참 : 최효심, 김태성, 이창호, 김유미, 차윤정, 김은주(6명)
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5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2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11월 12일(화) 제201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4년 11월 ~ 2025년 1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**제58조(사업의 이용)**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**11월 신규 조합원(8명, 11명(가구원))** : 전선녀, 민경남(이창학), 장옥수(김민주), 문음천(문명봉, 민명자, 전현택, 전유택), 박재미(우천구, 우수희, 우연희), 김영이(김차석), 전명화(심금식), 김기봉
- **12월 신규 조합원(10명, 11명(가구원))** : 김연혜(손동주), 이정숙(류지오, 류예나), 이만희(박석녀, 이용선, 이재환), 고옥진, 김순자, 복수곤(김삼은), 복미화(최연서, 최서연, 최윤서, 최민서), 고옥이, 김은숙, 김동현
- **25년 1월 신규 조합원(10명, 11명(가구원))** : 유제옥(이형심, 유채원), 원기연, 전예숙(주영호), 이재훈(심재분, 이재희), 노경자, 전아영, 신경애, 최성자(최종범, 최승수, 최현지), 방정선(박희례, 이정성, 이규연), 유홍렬

- **총 가구원 28명(33세대)** ***총조합원수 1,705명(25년 1월 31일 기준)**

-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건

1. 제안 배경
- 조합 제11차(통합 23차) 정기대의원 총회 소집에 따른 일시 및 장소 확정 및 상정 의안 확정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

- 제32조(총회의 의결사항)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3. 임원의 선출과 해임

- 제49조(임원의 해임)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※협동조합기본법
제31조(대의원총회)
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"조합원"은 "대의원"으로 본다. 다만,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·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[개정 2014.1.21] [[시행일 2014.7.22]]

3. 제안 내용
- 제11차(통합23차) 정기대의원총회 일정(안)
 일시 : 2025년 3월 13일(목) 저녁 6시 30분
 장소 : 밝음신협 5층 강당

- 심의안건(안)
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
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- 결손금 처리안
 제3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
 제4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
 제5호 의안 (아이쿱 연대협력 선출) 임원 해임의 건
 제6호 의안 정관 개정(안) 승인의 건
 제7호 의안 2024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
 제8호 의안 기타 안건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3호 의안 : 2025년 상임 임원 보수 결정의 건

1. 제안 배경
- 2025년 상임 임원 보수 결정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제44조(임원의 정수)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.
- 제50조(임원의 보수 등)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3. 제안 내용
- 상임 임원 : 신승훈 전무이사
- 2025년 월 보수액 : 별지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**제4호 의안 : 통합돌봄본부장 선임의 건(재가방문요양센터장 겸직)**

1. 제안 배경
 - 관련 : 제200차 이사회(강원의료사협 81차, 240904) 제5호 의안 :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채용의 건

-> 결정 사항 : 센터장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내부 직원 (진단)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섭외를 통한 확대 (진단)회의를 통해 재가방문요양센터의 명확한 방향성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다.

- 2024년 12월 6일 오후 2시 재가방문요양센터 내부 진단 및 회의 진행
*참석자(6명) :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최효심 이사, 신옥경 부장,
염은경 과장, 유진영 사회복지사
*진단 회의 결과

1. 재가방문요양센터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
 - 센터장과 실무자간의 역할 분담
 - 센터의 목표 및 목적 재확인하기
 : 대상자 확대+서비스의 질 향상+의료기관 연계 협력의 장점 살리기

2. 재택의료센터 실무책임 사회복지사 : 박준영 부이사장이 담당.

3.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한 조합 차원의 고민(외래 및 재택)
 - 외래 대상자 전수조사:틀 만들어서 씨젠 참고해서 전화
 -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통해 외부 수급자 수용

4. 향후 통합재가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신청 후 진행 고민 : 염은경, 안의현 담당

5. 재가방문요양센터 대상자 월 한도액 조사해서 한도액 남는 경우 방문간호 연계

6. 재택의료 대상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만나기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 - 의료 기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, 복지,

자원연계 등 이해가 폭넓은 내부 임원(박준영 부이사장)을 통합돌봄본부장(재가방문요양센터장 겸직)으로 선임코자 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5호 의안 : 우리동네주치의의원 폐업의 건

1. 제안 배경
- 재택의료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개설한 우리동네주치의의원(원인동 소재)이 계속 되어온 의사 구인 지연과 안정적 운영방안 미확보 등 의 사유로 22년 6월 1일부터 ~ 현재까지 3년째 휴업을 연장하며 유지해옴.
- 조합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근시일 내 제2진료소를 원활하게 운영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폐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우리동네주치의의원 폐업 신고(보건소)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6호 의안 :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2025 세입세출예산(안)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2025 재가방문요양센터 세입세출예산(안) 승인 후 원주시 보고 사항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4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[시행 2023. 1. 1.]
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(이하 “시설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.
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 <신설 2012. 8. 7.>

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<개정 2009. 2. 5., 2012. 8. 7., 2015. 12. 24.>

3. 제안 내용
- 세입·세출 예산 편성 내역
 1) 세입 : 기타전입금 추가
 2) 세출
 ① 인건비 : 시설장에 해당하는 급여 및 각종수당, 퇴직적립금, 사회보험부담금 추가 (모두 간접 인건비에 해당)
 ② 회의비 : 운영위원회 신설로 인한 경비 추가

과목								2024년 예산	2025년 예산	증감률	비고
관		항		목		세목					
01	입소자(이용자)부담금수입	11	입소(이용)비용수입	112	본인부담금수입	1121	본인부담금수입	28,500,000	29,000,000	1.8%	
06	요양급여수입	61	요양급여수입	611	장기요양급여수입	6111	장기요양급여수입	246,400,000	235,000,000	-4.6%	
				612	가산금수입	6121	가산금수입	25,000,000	24,000,000	-4.0%	
08	전입금	81	전입금	813	기타전입금	8131	기타전입금	0	48,000,000		
09	이월금	91	이월금	911	전년도이월금	9111	전년도이월금	14,000,000	1,900,000	-86.4%	

10	잡수입	101	잡수입	1012	기타예금 이자수입	10121	기타예금이자수입	100,000	100,000	0.0%	
				1014	기타잡수입	10141	기타잡수입	6,000,000	1,000,000	-83.3%	
세입계								320,000,000	339,000,000	5.9%	
01	사무비	11	인건비	111	급여	1111	급여 (직접비)	228,300,000	183,300,000	-19.7%	인건비비율 90.8%
						1112	급여 (간접비)	0	28,800,000		
				112	각종수당	1121	각종수당 (직접비)	0	31,000,000		
						1122	각종수당 (간접비)	0	4,400,000		
				115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	1151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(직접비)	17,000,000	21,500,000	26.5%	
						1152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(간접비)	0	3,400,000		
				116	사회보험부담금	1161	사회보험부담금(직접비)	18,000,000	25,800,000	43.3%	
						1162	사회보험부담금(간접비)	0	4,000,000		
		12	업무추진비	121	기관운영비	1211	기관운영비	9,700,000	10,000,000	3.1%	
				123	회의비	1231	회의비	0	3,000,000		
		13	운영비	131	여비	1311	여비	1,000,000	1,000,000	0.0%	
				132	수용비 및 수수료	1321	수용비 및 수수료	2,000,000	3,000,000	50.0%	
				133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	1331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	1,000,000	1,200,000	20.0%	
				137	기타운영비	1371	기타운영비	1,500,000	5,200,000	246.7%	
04	전출금	41	전출금	412	기타전출금	4121	기타전출금	35,500,000	9,900,000	-72.1%	
07	잡지출	71	잡지출	711	잡지출	7111	잡지출	5,000,000	2,500,000	-50.0%	
08	예비비 및 기타	81	예비비 및 기타	811	예비비	8111	예비비	1,000,000	1,000,000	0.0%	
세출계								320,000,000	339,000,000	5.9%	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서 명

의장 이광희	**이사 박준영**
이사 서연남	**이사 김선기**
이사 염은경	**이사 신승훈**
이사 이윤승	**이사 천혜란**
이사 정연우	